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4-18호

「고흥군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6월 27일

고 흥 군 의 회 의



고흥군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기후 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부터 고흥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폭염·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 (안 제3조)
- 폭염·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(안 제4조)
- 예방사업 (안 제5조)
- 폭염·한파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4. 6. 28. ~ 2024. 7. 4.(7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.

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 조례 제 호

고흥군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폭염·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고흥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폭염”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(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)가 발령되어 고흥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.
2. “한파”란 매우 심한 추위로 인하여 한파특보(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)가 발령되어 고흥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.
3. “폭염·한파 취약계층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9의3호 “안전취약계층”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의제2호의 수급자,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한다.
4. “폭염·한파 저감시설”이란 쿨링포그, 그늘막, 무더위·한파 쉼터, 온열의자 등 폭염·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폭염·한파로부터 고흥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폭염·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) ① 군수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·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고흥군 폭염·한파 대응 종합대책(이하 “종합대책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표 및 추진방향
2. 폭염·한파 현황 및 전망
3. 폭염·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
4. 무더위·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
5. 폭염·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
6. 폭염·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
7. 폭염·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
8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·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관계부서의 협조) 폭염·한파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,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(예방사업) 군수는 폭염·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무더위·한파 쉼터 운영·지원 사업
2. 폭염·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
3. 폭염·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
4. 기상청 폭염·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 사업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폭염·한파 취약계층 지원) 군수는 폭염·한파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7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
2. 냉난방 물품 지원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재난도우미 운영) ① 군수는 폭염·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이장·부녀회장
2. 건강보건 전문인력
3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
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5.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

② 재난도우미의 지정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폭염·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고흥군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